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”로 규정되어 있고, 같은 항 제2호에서 “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공유수면관리법」과 「공유수면매립법」은 2010년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따라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”과 “「공유수면매립법」”을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.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”를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”로, “제8조에”를 “제17조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9조에”를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, 인가, 면허, 승인, 지정, 결정, 신고, 해제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시장·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1. 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. 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3. ~ 14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11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----- ----- ----- 제17조에 ----- ----- 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----- ----- 3. ~ 1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